

『도서문화』 논문 투고 및 원고 작성 규정

제정 2003. 1. 8.	개정 2005. 3. 16.
개정 2006. 4. 12.	개정 2007. 3. 21.
개정 2008. 4. 23.	개정 2010. 6. 14.
개정 2013. 12. 20.	개정 2014. 4. 11.
개정 2014. 6. 20.	개정 2015. 12. 9.
개정 2017. 5. 10.	개정 2018. 3. 29.
개정 2019. 12. 27.	개정 2020. 3. 3.
개정 2021. 3. 24.	개정 2022. 6. 25.
개정 2024. 12. 30.	개정 2025. 12. 1.

제1조(투고내용)

1. 『도서문화』의 투고 내용은 도서·해양문화 관련 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형식은 논문(기획논문, 일반논문), 서평, 연구노트, 자료소개 등이다.

제2조(투고자격)

1. 투고자는 도서문화연구원에 가입한 회원에 한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공동으로 작성한 원고일 경우 최소 1인이 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간행시기)

『도서문화』는 1년에 2회(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간행한다.

제4조(원고모집 및 투고)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단, 간행 60일 이전에 도착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원고접수 및 논문심사는 JAMS 시스템을 이용한다.
3. 투고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18쪽 내외), 연구노트는 100매 내외(A4 12쪽 내외), 그리고 서평과 자료소개는 30매 내외(A4 4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심사료)

투고자는 『도서문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제6조(게재료)

1.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게재료를 납부한다.
 - 1) 일반 논문 10만원, 4대보험 가입된 연구자 20만원, 연구비지원 논문은 40만원을 납부한다.
 - 2) 주 저자가 비전임 연구자(정년, 강사, 대학원생)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
2. 원고지 150매를 초과한 경우 추가 인쇄비(원고지 1면당 3,000원)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저자의 표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으로 인정되며,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저자의 표기는 제1저자, 제2저자, ..., 교신저자 형식으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동저자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3. 저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제8조(논문요건)

1. 논문요건
 - 1) ①제목, ②소속기관, 직위, 저자, ③목차, ④국문초록(600자 이내), ⑤주제어(4개 이상), ⑥본문, ⑦참고문헌, ⑧영문제목, ⑨소속기관과 직위 및 저자의 영문명, ⑩영문초록(학술지 인쇄면 2쪽 이내, A4 1매 이내), ⑪Keywords(4개 이상) 등을 포함한다.
 - 2) 외국인의 경우, ①논문제목(한국어, 자국어, 영어), ②논문초록(한국어, 자국어, 영어), ③키워드(한국어, 영어), ④본문(자국어) 등을 포함한다.
2. 연구노트, 서평, 자료소개 등의 원고 요건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논문작성 및 제출)

1. 논문은 한글로 작성한다.
2. 장·절·항의 번호 부여는 I, 1, 1), (1), ①, ㉠ 순으로 한다.
3. 한자는 괄호 안에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한자 병기는 1회만 기재해도 된다.
4.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의 인용 시 번역문을 본문으로 하고, 각주에 원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투고논문 작성양식)

1. 투고 논문은 아래와 같이 글자크기를 지정하여 작성한다.
 - 1) [논문제목]의 글자규격은 크기 20pt.
 - 2) [본문]의 글자규격은 크기 10pt.

- 3) [장 제목]의 제목의 글자규격은 크기 15pt.
- 4) [절 제목]의 글자규격은 크기 12pt.
- 5) [인용문]의 글자규격은 크기 9pt.
- 6) [각주]의 글자규격은 크기 9pt.
- 7) [참고문헌]의 규격은 본문에 준한다.
2. 도표와 그림은 필요 시 위의 편집스타일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기타 사항은 본 연구원 출판부의 의견에 준한다.

제11조(인용문 및 부호)

1. 인용문은 들여쓰기를 하여 본문과 구별한다.
2. 본문의 인용문은 “ ” 로 하고, 강조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 로 표시한다.
3. 본문에 언급되는 작품·신문·논문은 「 」, 작품집·문집·저서는 『 』로 각각 표시한다.
4. 본문 중 참고문헌은 기술하지 않고 각주에 정리한다.

제12조(각주 및 참고문헌)

1. 단행본은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면수 순으로 기재하고,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은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편집·발행처, 발행연도, 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헌은 위의 표기방식을 따른다. 단, 단행본의 경우 인용한 쪽수 표시는 할 필요가 없으며,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만 표기한다.
2.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 』로 표시한다.
2. 영문 논문은 “ ”, 영문 단행본 및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3. 신문과 같은 일간지는 연·월·일을 표기하되, 마침표(.)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4. 거듭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시한다.
5. 각주에서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6. 참고문헌의 경우 자료, 저서, 논문, 웹사이트(신문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단 한국 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외국 문헌의 경우 저자명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7. 각주는 다음 예시에 맞춰 작성한다.
 - 1) 홍석준, 「아시아의 해양세계와 항구도시의 역사와 문화」, 『도서문화』 29,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07, 403~439쪽.
 - 2) 김경옥, 『섬과 바다의 사회사』, 민속원, 2012, 50쪽.
 - 3) 홍석준, 위의 논문(또는 앞의 논문), 410쪽.
 - 4) 김경옥, 위의 책(또는 앞의 책), 104쪽.
 - 5) 홍석준, 「아시아의 해양세계와 항구도시의 역사와 문화」, 『도서문화』 29,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07, 410쪽; 김경옥, 『섬과 바다의 사회사』, 민속원, 2012, 104쪽

- 6) Sun-Kee Hong, Jan Bogaert, Qingwen Min, *Biocultural Landscape, -Diversity, Functions and Values*, Springer, pp.150~160.
- 7) Jae-Eun Kim, "Rural landscape and biocultural diversity in Shinan-gun, Jeollanam-do, Korea",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38(2), The Ecological Society of Korea, 2015, pp.249~256.

제13조(지적재산권 및 정보공유)

『도서문화』의 판권은 본 연구원에 속하며, 게재된 논문은 Web에서 공개·공유한다.